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5. 1. 14(금)

관광건설위원장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2월 14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4년 12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2005. 1. 13)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

### 가. 제안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총괄, 조정 협의 등
-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장(도지사)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로 구성

-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실무위원회(안 제7조)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둠
  
- 조사·연구(안 제8조)
  - 관계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 의뢰
  -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예산 범위내 지원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 일 수)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 2004. 6. 1 소방방재청이 출범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2004. 6. 18)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과 제7조 실무위원회 위원정수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제3조(위원회의 구성)제1항 제2호의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소방본부장”을 “충청북도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

방본부장”으로 제6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충청북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제7호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을 “충청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3조(운영세칙)를 다른 조례와 같이 조정하여 운영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3조(운영세칙)”를 “제13조(운영규정)”으로 함

7. 심사 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5. 1. 13

제안자 : 송은섭 의원의외

### 가. 수정이유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3조(운영세칙)를 다른 조례와 같이 조정하여 운영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골자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3조(운영세칙)”를 “제13조(운영규정)”으로 함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운영세칙)”를 “제13조(운영규정)”으로 함

## 조 문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운영세칙) ① (생략)	제13조(운영규정) ① (생략)

##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행정부지사
2.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소방본부장
3.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4. 충청북도 지역 관할사단장
5. 충청북도 교육감
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외)
7.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인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조사·연구)**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①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이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시·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하에 시·군·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부의되는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